

한국의 국가 위기관리 감사체계의 발전방향

- 미국과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

이주호**, 안철현, 이재권, 심형섭***

본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체계를 정립하여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감사체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 실태를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래 위기환경이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책무가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국가 위기관리 감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감사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보다 적극적인 국정감사의 ‘나침반 및 나팔수’, ‘조언자 및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가 위기관리 분야에 있어서 감사 활동은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나침반나팔수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감사를 통한 국가 위기관리 마인드 및 문화의 고취와 역량의 증진, 공공부문 감사 영역에서의 위기관리 감사 활성화와 협업체계 구축,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위기관리 분야 감사역량 배양증진을 위한 전략적 대안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감사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사안 중심이나 사업에 대한 일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 사업의 지속적인 감사활동과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주제어: 국가 위기, 국가위기관리, 감사원, 감사영역, 감사체계

I. 서론

국가 위기관리는 정부의 중요한 국정영역 중 하나이며 점차 그 중요성은 여러 가지 위기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증대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중요한 영역이자 책무인 국가 위기관리는 위기관리업무를 실제로 기획 및 집행하는 체계와 기획 및 집행 내용을 평가 및 감찰하는 체계가 각각의 임무와 책임을 기반으로 존립·가동되고 상호 간 적정한 연계·학습구조를 가질 때 더욱 실효적일 수 있다.

* 본 연구는 감사원의 “국가위기관리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연구의 일부를 보완·발전시킨 것임을 밝힙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특히 국가 위기관리 체계 및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감찰기능을 하는 감사체계는 정부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위기관리업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긴장감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개선·발전을 견인 및 추동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가 위기관리에 있어 매우 긍정적이고 중요한 체계라 할 수 있다.

감사는 그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재무감사, 기관운영감사,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로 구분되며, 특히 성과감사는 정부정책 및 사업의 결과로 얻어진 산물의 평가, 정부활동이 가져다 준 효과나 영향평가에 더 많은 역점을 두는 적극적이고 지원적인 감사라 할 수 있다(김동성, 2000: 3). 이에 따라 감사기구는 감시자로서의 역할(auditor rule), 조언자로서의 역할(advisor rule), 연구개발자로서의 역할(researcher and developer role), 모범적 기관운영자로서의 역할(model organization role)이 강조되며(김명수 외, 2009: 23), 감사기구의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분야별로 전문화가 강조되어 적발, 시정, 책임확보 뿐만 아니라 예방과 억제를 강조하는 것(김명수 외, 2009: 22)이 현대적 감사의 큰 변화 방향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의거하여 여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국가 위기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관련 예산 및 회계의 상시 검사·감독, 관련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사활동은 전략적·성과중심·전향적 감사¹⁾ 등의 시스템 감사적 형태를 보이면서 위기의 예방 및 업무 개선을 위한 대안 권고, 또는 재발방지 및 문책을 위한 징계처분 요구나 이들을 혼합한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²⁾. 즉 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시·일상감사보다는 특별감사적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위기 및 위기관리의 차별적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반감사의 접근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더욱이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감사에서는 위기관리 분야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 등 여러 부문에서 개선 및 전향적 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국가 위기관리 분야에 있어서는 기후의 급속한 변화와 이로 인한 신종 및 대규모 복합재난의 빈발, 전력·원전·사이버 등 국가핵심기반 분야에서의 위협요인 증가, 안보리스크 고조와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대표되는 위기환경 하에서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정비와 개선에 있어 세계적 추세에 맞춰 감사체계에 대한 발전이 함께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감사체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국가 위기관리 의의와 분야별 특성을 고찰하고, 둘째, 미국과 영국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의 시사점을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한국의 감사체계

1) 전략적 감사는 연관 파급효과가 큰 취약 분야에 집중하는 감사, 성과중심 감사는 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전향적 감사는 행위 적정성은 물론 부작위까지도 감사중점에 포함하는 동시에 수범사례도 적극 발굴하는 감사(김명수 외, 2009: 62 참조).

2) 감사원이 실시한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시기,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도출한 현행 감사체계의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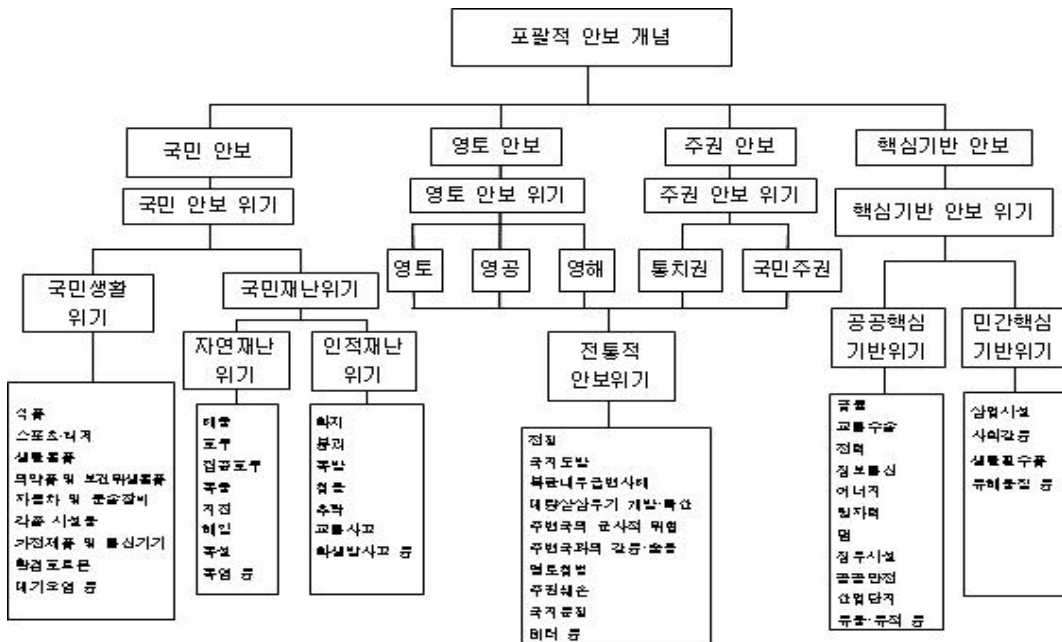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감사영역으로서 국가 위기관리의 의의와 영역

1. 국가 위기관리의 의의

현대 국가의 위기 영역은 군사 위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자원, 기술과 대형의 재난 등 비군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조영갑, 2003: 23).

사실 ‘포괄적 안보’개념은 1990년대 동서 진영 간 냉전 구조가 해체되고 전쟁의 위협이 감소되면서 동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다자 구도로 전환되는 안보환경의 변화 초기부터 형성되기 보다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부시 미 행정부가 테러와 같이 다양해진 국가적 위협에 대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면서 부터이다. 미국 정부는 2002년 9월 2일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의 군사적 안전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위기관리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도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다양한 국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 ‘포괄적 안보’개념이 국제사회의 위기관리 개념으로 대두되게 되었던 것이다(안철현, 2005: 17).



〈그림 1〉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

※ 자료: 이재은(2012: 76) 재인용.

이처럼 위기 개념이 확대되고, 포괄적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는 데에는 현대 복지국가의 출현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즉 90년대 말 이후 국가들이 시민의식의 증대에 따라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경제발전과 안보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환경,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인권 등에까지 역할과 책임을 확대하고, 특히 다양한 위협에 노출된 국민을 그 위협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인식³⁾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허태희 등, 2005: 31-32).

이러한 ‘포괄적 안보 또는 위기관리’개념은 국가가 관리해야 할 위기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 국가 위기관리의 범위와 분야별 특성

국가 위기관리의 범위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의 서문 취지를 적용하여 살펴보면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범위가 되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단 동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위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1) 안보 분야 위기

오늘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보 분야 위기관리 과제는 군사적 부문에서 국가 총력전 개념의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것이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직면하여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지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국가방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야 한다. 군과 경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향토 예비군, 민방위대 등 제반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는 일은 최고 통수권 차원의 결정 및 지침과 유관 정부부처 및 기관들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이은득, 2004: 314).

전통적 안보에 관한 국가위기는 통일, 외교, 군사 분야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기와 주변국 등 외부로부터의 위기로 구분할 수 있다. 안보 위기에 대한 위기관리 정책은 군사력 사용에 대한 준비와 위기 해결에 대한 의지의 과시 사이의 세련된 균형을 요구한다. 자신의 국익을 보호하고 무력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갈등과 협력 행위의 조화에 위기관리정책은 관심을 가진다(김호준, 2000: 330).

먼저, 북한으로부터의 국가위기에는 군사력 사용의 위협, 국지도발, 비군사적 위협,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및 확산, 기타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각종 사건이나 상황 등이 있다. 다음으로, 외부로부터의 국가위기에는 우리나라와 주변국 및 기타 국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 국가 영토의 침범, 갈등·충돌, 테러, 주변국간 충돌·전쟁으로 인한 위협 등이 있다.

3) 예 :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6월 25일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과 관련, “대통령과 정부의 주요 책무인 국가 위기관리의 대상에는 ‘포괄 안보’개념에 의해 전쟁 등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대형 재난재해, 국가 기능 마비 등 다양한 위기유형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반적인 국가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NSC사무처 위기관리센터 개소식 치사).

안보 분야의 위기는 발생할 가능성 및 확률이 높지는 않아 잠재적 위험 또는 위협 상태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규모 및 파급영향이 크며, 때로는 복합위기적 성격과 양상⁴⁾을 띠게 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해NLL 우발사태(1999, 2002, 2009),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도발(2010), 북한군 대남침투 도발(1968 울진삼척, 1996 강릉잠수정), 일본의 독도 관련 도발시도(2006), 사북탄광 사태(1980) 등이다.

2) 재난 분야 위기

재난 위기는 전쟁이나 외침의 우려가 없는 대내적 위기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심대하게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위기 못지않게 위협하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그 사태를 효과적으로 수습하지 못하고 인명과 재산의 구조에 실패할 경우에는 정치권력도 그 존립을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관리는 국가적 위기 대처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이은득, 2004: 316).

재난 분야의 국가위기는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먼저, 자연재난은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서, 태풍·폭풍·호우·홍수·해일 등으로 인한 풍수해, 폭설·가뭄·적조 등으로 인한 기상재난, 산사태·해안의 침식·지진·화산 등으로 인한 지질재난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인적재난은 안전요인이나 인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로서, 대규모 화재, 폭발, 붕괴, 환경오염사고,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등이 있다.

재난 분야 위기는 자연재난의 경우, 발생 및 피해의 예방에 한계가 있어 피해의 최소화에 역점을 두는 재난으로서 발생빈도가 높은 편이며 매년 대규모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태풍 루사(2002)와 매미(2003), 수도권 집중호우와 우면산 산사태(2011), 등이 있다. 인적재난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어느 정도 발생의 억제가 가능하나,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며 발생 공간의 규모와 위치·노후 정도·인간의 과실 내용·발생 당시의 자연환경·대응의 신속성과 적정성 정도 등에 따라 피해규모 및 파급영향이 다양하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 대구지하철 화재사고(2003), 신종플루(2009), 구제역(2010), 태안 기름유출사고(2007), 양양 산불과 낙산사 소실(2005) 등이 있다.

3) 국가핵심기반 분야 위기

국가핵심기반은 복잡한 사회적 시스템으로서(Vrijling, J. K., *et al.*, 2004: 569),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주권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명력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시설·시스템·기능으로 정의될 수 있다(이재은, 2004: 80). 국가핵심기반 분야의 국가위기는 테러, 대규모 시위·파업, 폭동, 재

4) 2010년 11월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은 (1) 북한군의 불시 포격도발, (2) 우리 군과 주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 (3) 연평도 일원의 기간시설 및 행정 마비, (4) 주민의 대피와 생활 불안정, (5) 국민의 불안감 증폭 등과 같은 복합적 위기 양상 및 피해를 초래한 대표적 사례.

난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물적·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국가핵심기반 분야에는 에너지⁵⁾, 식·용수, 보건·의료⁶⁾, 정보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 산업단지, 정부 중요시설, 국가 주요자산 및 국가 상징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국가상징물의 경우에는 63빌딩과 월드컵 스타디움, 올림픽 경기장 등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폭탄 테러의 발생 또는 서해대교 등 특수구조물의 파괴로 복구 소요기간이 장기화되었을 경우 물류 수송 대란은 물론 국가 상징물에 대한 보호대책 미비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조성되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다(이재은, 2005: 69-70).

이러한 국가핵심기반 위기 분야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 경제의 안정성 및 정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테러, 대규모 불법시위·과업, 폭동, 재난 등의 제반 위협 및 위협으로부터 국가핵심기반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핵심기반 위기 분야에서는 최소한의 국가핵심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대체자원, 즉 인력, 물자, 장비 등의 활용과 관련된 제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포함된다.

동 분야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마비 등이 발생하며, 근본적으로 예방 및 피해의 억제는 불가능하고, 다만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 정부기능 유지에 핵심적인 필수기능을 유지하고 조기에 복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따른 물류기능 마비(2003), 수도권 전력공급 중단(2011), 구미칠곡 지역 식용수 공급 중단사태(2011), 폭설에 따른 경부고속도로 통행 마비(2004) 등이 있다.

III. 해외 주요 감사기관의 국가 위기관리 감사실태

1. 미국 감사기관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실태

1) 미국의 국가 위기관리 감사체계

미국 감사기관의 국가 위기관리 감사체계는 감사원(GAO: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에서 수행하고 있는 감사체계와 국가 위기관리 분야별 담당기관의 자체 감사조직인 직무감찰국(OIG: Office

5) 국가핵심기반 중에서 에너지 위기는 에너지 시설과 운영 체계 등의 시스템이 파괴되거나 운영 중지 또는 수급에 이상이 생겨 공급과 유통이 중단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당 분야는 전기, 석유, 가스 등의 발전·전송·배분 등이 대상이다(119페이지, 2004: 145).

6) 보건·의료 관련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는 보건·의료 기관의 시설이나 설비의 파괴, 운영 중단 등으로 보건·의료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예방체계가 미흡한 사스(SARS), AIDS 등의 전염병 확산, 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폐지콜레라, 구제역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축 전염병 확산 등을 포함한다(이재은, 2004: 85).

of Inspector General)에서 수행하는 감사체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GAO에서는 국가위기를 중요 감사사항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2015년간 추진하는 전략계획 프레임워크⁷⁾을 수립하면서 국가안보위협(National Security Threats)을 한 분야로 선정하여 감사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GAO의 전략계획 프레임워크(10년~15년)

- 전략계획 프레임워크에 적용한 트렌드
 - 국가안보위협(National Security Threats), 재정지속성(Fiscal Sustainability Challenges), 경제회복 및 성장(Economic Recovery and Growth), 글로벌 상호의존(Global Interdependence), 과학 및 기술(Science and Technology), 네트워크 및 가상화(Networks and Virtualization), 정부의 역할변화(Shifting Roles of Government), 인구 및 사회변화(Demographic and Societal Change) 등 8가지 트렌드를 적용하여 전략계획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음
- 전략계획 프레임워크의 관리 대상 중 국가위기관리 관련 대상
 - 보건의료(Health care needs), 국가인프라(Infrastructure), 국토안보(Homeland security) 분야 등

※ 자료: US GAO(2010).

미국의 국가 위기관리 감사체계는 국가 위기관리 18개 분야 중 화학(Chemical), 상업시설(Commercial Facilities), 주요 제조회사(Critical Manufacturing), 댐(Dams), 긴급서비스(Emergency Service), 원자로, 재료 및 폐기물(Nuclear Reactors, Materials, & Waste)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국토안보부(DHS) 시설보호국(IP: Office of Infrastructure Protection, IP)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부처의 감사국(OIG)의 감사 근거

- 미국은 '78년 「직무감찰법(The Inspector General Act)」에 의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핵심기반체계보호와 관련해서는 '02년 「국토안보법(The Homeland Security Act)」를 근거로 관리하고 있음

※ 자료: GAO(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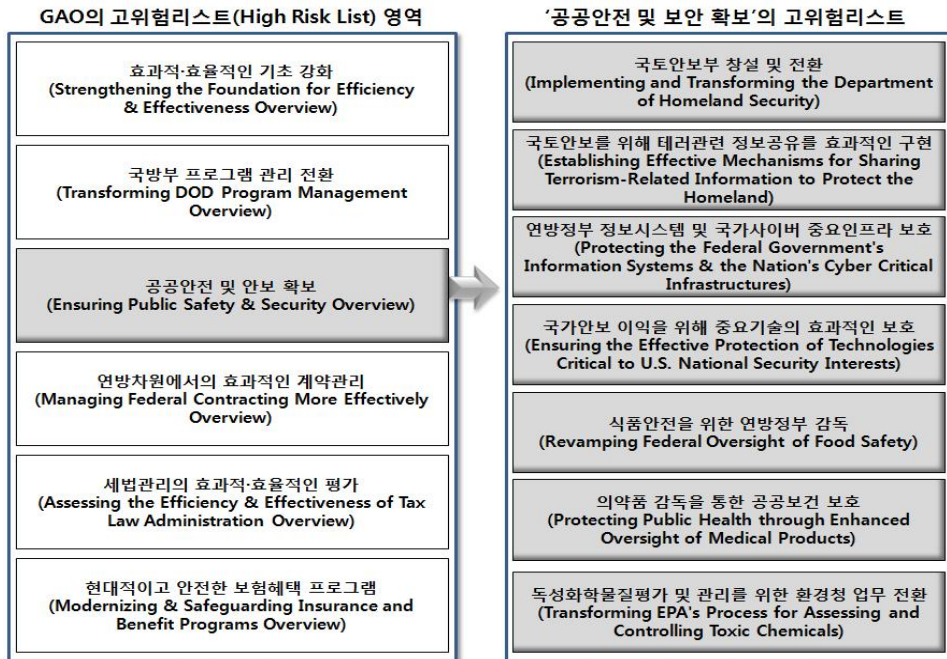
GAO는 '03년부터 국가안보 분야를 고위험리스트(High-Risk List)에 포함하여 감사계획 및 수행에 활용하고 있다.⁸⁾ 국가안보 분야를 고위험리스트에 포함한 이유는 국토안보라는 중요한 업무특성이 반

7) US GAO, "Strategic Plan: Serving the Congress and the Nation 2010-2015", GAO-10- 559SP, 2010.

8) GAO에서는 1990년부터 위험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고위험리스트(High-Risk List)를 작성하여 감사계획에 활용하고 있다. <http://www.gao.gov/highrisk/>

영되었지만, 무엇보다도 '03년에 설치된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가 기존의 22개 부처의 업무를 통합하고, 20만 명 이상의 직원과 한해 예산으로 400억 달러이상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AO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감사를 수행하고 있다.

2011년 작성한 고위험리스트는 다음 그림과 같이, 6개 영역 중 공공안전 및 안보 확보(Ensuring Public Safety & Security Overview)를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창설 및 전환, 국토안보를 위해 테러 관련 정보공유를 효과적인 구현 등 7가지의 고위험리스트를 작성하여 감사에 반영하고 있다.



<그림 2> GAO의 고위험리스트 중 국가위기관리 영역

※ 자료: GAO(2011).

2) 미국의 국가 위기관리 감사사례

GAO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는 국가핵심기반보호(CIP: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감사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위기관리와 관련한 감사를 많이 수행되었지만 CIP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대응능력, 정보·분석·경보, 사이버, 전략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아래 표와 같이, 사이버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국가 위기관리 대응 능력을 점검하는 감사 11건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01년 9·11테러 이후 ‘01년~‘05년 사이에는 국가 위기관리 대응능력에 9건으로 가장 많이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06년~‘10년까지는 사이버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가 11건으로 많이 이루어졌다.

<표 2> GAO의 CIP 분류에 따른 감사보고서 현황

구분	00년 이전	01년~05년	06년~10년	11년 이후	계
대응능력	1	9	1	-	11
정보분석경보	1	3	-	3	7
사이버	4	5	11	1	21
전략	1	1	3	-	5
계	5	18	14	4	44

GAO는 ‘01년 9·11테러 이후 정부차원과 연방정부차원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관련 정보를 분석하고 경보발령, 대응능력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다. ‘01년에는 국토안보부가 새롭게 만들어짐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갖추어야 할 대응능력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목	중요한 국토안보 과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Significant Homeland Security Challenges Need to Be Addressed, GAO-02-918T, 2002)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러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취약성 감소와 공격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 국토안보부에서 정보분석 및 인프라 보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잠재적인 위협을 감지·식별 등 분석 기능, 주요 자원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기능, 포괄적인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기능, 관련기관과의 협력하는 기능 등이 포함됨 - 이를 위해서 FBI, 국방부 등 6개 조직의 국토안보 기능 일부가 국토안보부(DHS)에 포함되었음
조치	- 국토안보부에게 국가핵심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분석 및 경보 능력, 정보공유를 개선하도록 권고함

‘06년 이후에는 사이버테러 등 사이버안전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가 많이 이루어졌으며, ‘09년에는 연방정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제목	연방정부의 사이버자산 보호를 위한 OMB의 역할 (OMB Leadership Needed to Strengthen Agency Planning Efforts to Protect Federal Cyber Assets, GAO-10-148, 2009)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정보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03년 중요 정보인프라 보호 계획과 예산 등을 OMB가 승인하도록 하는 대통령 훈령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OMB에서는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였음 - 중요 정보인프라 보호계획 보고서를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해 보완여부와 OMB의 의견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였음
조치	- 많은 기관들이 보완 및 의견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OMB에게 제시한 조치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권고함

국토안보부의 자체감사부서인 OIG의 감사사례를 살펴보면, ‘09년 국가핵심기반시설에 대한 정보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목	국가핵심기반시설 및 자산 관리방법 점검 (Efforts to Identify Critical Infrastructure Assets and Systems, OIG-09-86, 2009)
내용	- 9·11테러 이후 국토안보부에서는 국가 주요 시설 및 자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National Asset Database)를 구축하였음 - 국가자산데이터베이스의 운용 및 효과,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점검하였음
조치	- 이러한 정보들을 특정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과 국토안보부의 정보분석 및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마련하도록 권고함

또한 특정 국가 위기관리 분야에 대해서 담당부서의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있는데 '07년 국토안보부의 방사능조사국(DNDO: Domestic Nuclear Detection Office)의 핵·방사능·생화학물질을 탐지 및 추적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능력에 대해 점검하였다.

제목	국토안보부의 방사능조사국의 대응 능력 점검 (DHS' Domestic Nuclear Detection Office Progress in Integrating Detection Capabilities and Response Protocols, OIG-08-19, 2007)
내용	- 국토안보부의 방사능조사국(DNDO)은 핵·방사능·생화학물질을 탐지 및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러나 방사능조사국의 업무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음
조치	- 방사능조사국과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협력하여 핵·방사능·생화학물질을 탐지를 위한 업무 조정과 협력할 것을 권고함

2. 영국 NAO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실태

1) 영국의 국가 위기관리 감사체계

영국 감사원(NAO: National Audit Office)에서는 감사사항을 <그림 3>과 같이, 시민 및 서비스 분야, 경제 분야, 환경 분야, 국가 이슈 분야 등 분야(Sector)별로 구분하여 감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위기관리는 주로 환경 분야의 교통 및 인프라(Transport & Infrastructure)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격에 따라 보건 및 사회보장(Health & Social Care), 지역서비스(Local Service), 환경·에너지·지속가능성(Environment, Energy & Substantiality)에서 수행되고 있다.

<p>시민 및 서비스 분야 (Citizens & servic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가정(Children & families) • 시민사회(Civil society & commissioning) • 문화, 미디어, 레저(Culture, media & leisure) • 교육 및 기술(Education & skills) • 취업 및 채용(Employment, jobs & careers) • 보건 및 사회보장(Health & social care) • 지역서비스(Local services) • 복지혜택(Welfare & benefits) 	<p>환경 분야 (Environ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지역, 재생(Communities, regions & regeneration) • 환경, 에너지, 지속가능성(Environment, energy & sustainability) • 주택, 부동산, 건설(Housing, property & construction) • 교통 및 인프라(Transport & infrastructure)
<p>경제 분야 (Economi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및 산업(Business & industry) • 중앙재정 및 재무(Central Finance & Treasury) • 개인금융(Private Finance) • 과학, 기술, 혁신(Science, technology & innovation) • 세금 및 관세(Tax & duties) 	<p>국가 이슈 분야 (National issu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간, 공공행정(Cross-government & public administration) • 국방(Defense) • 정보통신기술 및 시스템 분석(ICT and systems analysis) • 국제문제(International affairs) • 공공질서, 정의 및 권리(Public order, justice & rights) • 규제, 소비자 및 경쟁(Regulation, consumers & competition)

<그림 3> NAO의 감사대상 분야(Sector) 구성

※ 자료: NAO, http://www.nao.org.uk/section_2.aspx

영국은 국가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하여 중요국가기반시설(CNI: Critical National Infrastructure)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총괄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은 범정부기구인 국가인프라보호센터(CPNI: Centre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Infrastructure)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 국가안보 위협에 정부의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는 안보서비스 MI5(Security Service MI5)⁹⁾를 운영하고 있다.

2) 영국의 국가 위기관리 감사사례

NAO는 국가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중요국가기반시설(CNI)로 하여 주로 투입된 예산의 적정성과 중요국가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의 성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수행하였다.

NAO의 감사사례를 살펴보면, '99년 밀레니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여¹⁰⁾, 밀레니엄 문제 대두 시 대비할 것과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09년 성과보고서에서는 국가인프라보호센터(CPNI)에서 중요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정의 및 분류체계를 수립한 것을 성과로 제시하였다.

'09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중요국가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ACC:

9) 안보서비스(Security Service)를 제공하고 있는 MI5는 영국 국가안보정보청(National Security Intelligence Agency)으로써 1909년부터 각 부처 및 기관들에게 위협으로부터 취약성을 감소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http://www.mi5.gov.uk/>

10) 컴퓨터의 2000년 인식오류로 인해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밀레니엄 문제에 대비하여 '99년 밀레니엄 위협(The Millennium Threat: Are We Ready?)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Adapting to Climate Change)에 중요국가기반시설 적응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제목	기후변화 적응 (Adapting to Climate Change, 환경감사위원회, 2009)
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중요국가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정의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적응프로그램(ACC: Adapting to Climate Change)을 추진함 - 자연재해로부터 에너지보호, 교통체계 보호, 폐수처리나 강수량 증가 등으로 인한 수질보호 등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정의함
조치	- 자연재해로부터 중요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 적응할 것을 권고함

또한 국가 위기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는데, '02년에는 미국의 9·11테러를 교훈으로 신중위협에 대해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 위주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목	영국 보건당국의 재난대응계획 (Facing the Challenge: NHS Emergency Planning in England, HC 36, 2002)
내용	- 보건당국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많은 대응능력을 향상시켜왔으나, 9·11테러 이후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함 - 그 동안 철도, 비행기 사고로 인한 대응 능력을 마련되어 있으나, 테러와 같은 상황에서는 훈련, 평가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조치	- 대형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및 교육, 지침 등을 마련하고, 특히 방사능 및 생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도록 권고함

3. 시사점

국내의 위기관리 분야 감사사례와 해외 주요국의 위기관리 분야 감사사례를 종합할 때, 감사기준이나 방법 등에 있어서 통일된 체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감사의 형태, 감사의 대상 및 분야, 감사 시기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외의 경우 전체적으로 사전 점검형과 사후 감사형의 감사가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위기관리 분야에 있어 사전점검형의 감사 형태로의 전환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있거나, 중요한 사안 발생 직후에는 사전 점검형 감사가 주류 또는 급증하는 경향은 국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허리케인 Katrina 이후의 급격한 법률, 조직개편, 국가대비태세 변화 등으로 이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의원 요청의 감사 사례가 두드러진 특징이 있으며, 영국의 경우는 2005년 런던지하철 테러 및 2012년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테러 및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주로 위험 및 취약 분야를 대상으로 사전점검형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감사 대상 영역으로서 두드러지는 변화의 하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 분야에 대한 감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테러집단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국가핵심기반 분야에 대해 감사가 집중되고 있는 경향에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의 위기관리 분야 감사실태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각 국가별로 위기관리 분야만을 고려한 감사관련 법규, 감사기준, 감사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중요한 행사나 위협 등에 대비한 사전 점검과 사후 감사형의 감사 활동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의 경우 사전점검보다는 사후감사를,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보다는 법규준수, 재정지출, 그리고 운용실태 등에 대한 통제중심의 감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감사여부 및 형태를 결정하는 합리적, 객관적 기준이 없이 이슈 발생에 따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감사범위에 있어서도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조직적인 감사활동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는 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별도의 감사기준 및 접근방법이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후감사 중심에서 사전 점검형으로의 감사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입법부 소속 기관으로서 의원의 요청 및 관심에 대응하는 한편, 집행기관에 필요한 권고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법률 및 정책 실시 및 변경 이후의 프로그램의 구축, 운용실태, 성과,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정책평가 중심의 감사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관 중심의 평가 보다는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분야에 대한 평가활동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IV. 국가 위기관리 감사체계의 발전방향

1. 미래 위기환경 변화를 고려한 위기관리 감사

감사원은 2012년 수립한 ‘감사원 운영 기본계획’을 통해 “엄정한 감사원, 깨끗한 공직사회”라는 감사운영기조를 설정하고, 6대 전략감사 목표와 20개 전략감사 과제 및 209개 감사사항을 선정하여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이 중 위기관리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성장을 가로막는 위협요인에 대한 선제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동 6대 전략감사 목표 중 하나로 “국가미래위험 대비”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재정건전성 강화 및 세입기반 확충, 안보역량 강화 지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 제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시책의 실효성 제고 등 4개의 전략감사과제를 선정, 중점 추진 중에 있다.

이 중 안보역량 강화 지원,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 제고는 현재 감사원이 우리의 미래 위기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적극 대처하고 있는 분야이며, 이 밖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여타

인류·국민·공동체 위협요인들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감사대상에 포함시켜 감사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감사원의 위기관리 분야 감사는 기존의 위기유형 및 감사 대상에만 국한되기 보다는 급변하는 국가의 안보 및 사회 환경, 국가의 위기관리 수요와 국민의 요구 및 기대 그리고 신종 위기 특성 및 피해의 양상, 위기관리의 특성 및 환경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국가 위기관리 체계를 위한 감사원의 역할

국가 최고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위기관리가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제3자적 측면에서 검증하여 이의 결과를 주무 부처와 유관기관, 국민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인 위기관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역할은 크게 다음과 같은 역할이 요구된다.

첫째,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의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을 통해 국가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 위기관리의 법제적 측면과 실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적인 진단적 활동이 요청된다.

둘째, 실제적인 위기관리에 대한 감사 활동이다. 감사 대상 기관 및 영역별로 위기관리의 성숙도를 고려한 감사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위기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은 영역 등에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지도 및 개선적 측면의 감사 활동이 요청된다. 이에 대해 위기관리가 성숙되고 우리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지대한 기관에서 있어서는 위기관리를 보다 고도화하고 무사고(Zero Tolerance)를 위한 조직적인 감사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위험기반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국가 위기 위협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촉진자로서의 역할이다. 감사원에서 국가 최고 위기관리조직 등과 연계하여 국가 위기관리 요인을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감사 실무적 측면에서는 우리의 감사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사안을 분석하여 조기경보(Early warning)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위기에 대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각 기관이 주요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감사원은 물론 공공부문 위기관리 감사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위기 및 위기관리 특성을 반영한 적정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관리 감사 지침을 개발 적용이 시급히 요구된다. 위기관리의 감사 실무 수행에 적용할 감사 지침을 개발하는 것으로 위기관리 감사 체계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외부의 위기관리 및 감사 전문가, 감사원의 위기관리 감사 경험 있는 감사관 등과 함께 개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3. 국가 위기관리 감사체계 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과제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감사 실무의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 위기관리에 대한 나침반과 나팔수 기능이다. 국가 위기관리는 위기관리업무를 실제로 기획 및 집행하는 체계와 기획 및 집행 내용을 평가 및 개선 권고하는 체계가 각각의 임무와 책임을 기반으로 존재·가동되고 상호 간 내실 있는 연계·학습구조를 가질 때 실효적일 수 있다. 특히 국가 위기관리 업무에 대한 평가 및 개선 권고 체계, 즉 감사체계가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업무가 중요성과 특성 측면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긴장감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한 평가 및 개선 권고를 위해서는 국가 위기관리 감사체계가 현대적 감사의 중요기능인 ‘나침반’ 기능과 함께 국정 전반에 널려있는 위험요소 및 위기관리업무의 부실한 부분에 대한 ‘나팔수’ 기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나침반’ 기능은 오늘날 활성화되고 있는 성과감사의 주요 기능인 컨설팅, 자문과 같이 일종의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면, ‘나팔수’ 기능은 위기관리에 있어 일종의 경보적 기능과 유사한 것으로서, 잘못되거나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관해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려 경계·대비토록 하는 역할로서, 위기의 억제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첫째, 감사전문요원과 감사기관이 위기관리 일반 및 해당 분야에 대해 전문성과 위기관리 감사역량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하고, 국정전반의 주요 Risk·취약요인·신중 위기로인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 및 경보체계의 구축·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상시 모니터 및 위기경보 체계는 최고감사기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국가 위기관리 총괄기관의 위기경보 체계와 연계 또는 협조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둘째, 감사를 통한 위기관리 마인드 및 문화의 고취와 역량의 증진이다. 전통적으로 감사는 적법성 또는 합법성을 기준으로 불법성·위법성과 부당성을 규명하여 책임을 묻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감사의 이러한 기능을 위기관리 측면에 적용하면, 수시 또는 정기 감사를 통해 조직이 수행하는 제반 위기관리 업무의 불법성·위법성과 부당성을 발굴, 시정·보완토록 조치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활동이 곧 감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은 1차적으로 위기관리 활동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와 함께, 2차적으로 책임 규명 및 문책을 통해 위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들의 위기관리에 대한 마인드 및 인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개개인의 행태와 조직내부 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조직 내 올바른 위기관리 문화가 형성되는데 기본적 단초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의 실질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최고감사기구(감사원)는 물론 정부기관·공공기관 등에도 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지속적·제도적인 감사체계를 구축, 상시 감사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감사결과 책임을 묻는 징계·처분과 수범사례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들 감사기관(부서)들은 각종 국가위기 유형 및 요인에 대한 선제적 감사를 활성화하여 위기의 예방·억제에 중점을 두는 위기관리업무 환경의 조성을 견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공부문 감사 영역 전반에서의 위기관리 감사 활성화와 협업체계 구축이다. 감사체계 및 감

사활동이 국가 위기관리에 유용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 있다. 국가 위기관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정부기관만의 체계와 역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참여와 역할 속에 범정부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국가업무이다. 이렇듯 국가 위기관리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정부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즉 국가전체의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위기관리에 유용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관리 감사활동은 정부 감사체계의 수준 중 최고감사기구(감사원)에 의한 감사, 국무총리실 및 총괄기관에 의한 감사(평가)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수준의 위기관리 감사는 매우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공공기관 감사부서의 경우 법적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상시적 감사체계보다는 특정 계기에 한해 자체 또는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등 소극적·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범정부적 범위를 갖는 대표적 국가업무인 국가 위기관리에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는 위기관리 분야 감사가 감사원 수준뿐 아니라 위기관리의 중요한 주체들인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위기관리의 기본적 방향과 기준을 제공하는 법률, 또는 차선책으로 관련 지침 등에 감사원을 비롯한 관련기관의 위기관리 감사에 관한 근거를 분명히 마련하고, 이어서 현행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자체감사 대상에 위기관리 분야가 포함되도록 관계 법령이나 지침 등을 개정하는 한편, 정부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감사업무 평가에도 위기관리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과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공공부문에서의 위기관리 감사가 표준화된 내용과 기준, 상호 연계된 체계 하에 이루어져 국가적으로 시너지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효율적 위기관리 감사체계가 구축·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감사체계는 대통령실 또는 국가위기관리 총괄기관 - 국무총리실 - 감사원 - 분야별 총괄기관 -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간 분장과 연계·협력 및 표준의 구조로 구축되고, 협의체를 통해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위기관리 분야 감사역량 배양·증진이다. 위기관리 분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나름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분야로서, 실효적인 위기관리 분야 감사를 위해서는 차별적·전문적인 감사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과 같이 위기관리 분야 감사가 미흡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수준의 위기관리 감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감사의 권위 및 결과의 수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감사인력의 위기관리에 대한 감사역량이 배양·증진되어야 한다.

정부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의 위기관리 분야 감사역량을 배양·증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직 내 감사부서 인력의 충원 및 운용과정에서 감사 전문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고, 위기관리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현장 실습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교육은 앞서 제시한 위기관리 감사지침(매뉴얼)이 선행적으로 개발되고 이에 기초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위기관리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과정을 감사원(감사

교육원)에 제도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자체감사 조직의 위기관리 감사 역량을 위해 동 교육 과정을 확대 개방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감사연구원에 위기관리에 대한 감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위기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감사원 및 유관기관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하는 동시 위기관리 전문 분야 감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체계를 정립하여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감사체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 실태를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가 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는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긴장성 유지 및 체계의 지속적인 개선·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부의 역할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미래 위기환경이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책무가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국가 위기관리 감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감사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보다 적극적인 국정·국정의 ‘나침반 및 나팔수’, ‘조언자 및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가 위기관리 분야에 있어서 감사 활동은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나침반·나팔수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감사를 통한 국가 위기관리 마인드 및 문화의 고취와 역량의 증진, 공공부문 감사 영역에서의 위기관리 감사 활성화와 협업체계 구축, 정부부처·지사체·공공기관 등의 위기관리 분야 감사역량 배양·증진을 위한 전략적 대안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감사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감사활동이 사안 중심이나 사업에 대한 일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 사업의 지속적인 감사활동과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정별 중심의 감사에서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노하우를 축적하고 발전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가안전보장회의. 2006.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법제화 방안.

국가안전보장회의. 2008.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국립방재연구원. 2011. 신종재난에 대비한 재난 관리 방안.
- 김동성. 2000. 지방정부의 성과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김명수·문호승 외. 2009. 세계의 감사원.
- 심재현. 2012. 기후변화와 미래재난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역량강화. 지방행정. 61(699): 38-43.
- 안철현. 2005. 국가 위기관리 개념의 변화와 위기관리 체계의 구축방향. 비상기획보. 73: 14-28.
- 안철현. 2011. 위기관리 감사 현안. 서강대 내부감사 과정 강의자료.
- 이은득. 2004. 한국 위기관리체제의 발전방향. 교수논총(국방대). 38: 303-326.
- 이재은 외. 2006. 재난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 이재은. 2004. 재난관리와 국가핵심기반 보호체계 구축방안. 한국정책논집. 4: 77-90.
- 이재은. 2012. 위기관리학. 서울: 대영문화사
- 이재은. 2000. 한국의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집행구조의 다조직적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 이재은. 2005.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 III: 자연재난과 방재시스템.
- 전국재해구호협회. 2001. 전국재해구호협회 미래발전방안보고서: 희망브리지, 나아갈 50년.
- 조영갑. 2003. 전쟁과 재난. 비상기획보. 64: 21-23.
- 허태희·이상호·길병욱. 2005. 위기관리이론과 사이버안보 강화방안: 이론과 정책과제. 국방연구. 48(1): 29-62.
-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
- Barton. A. H. 1993. *Social Organization Under Stress: A Sociological Review of Disaster Studies*. Washington: NAS-NRC.
- Cigler, Beverly A. 1988. Emergency Manage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Crisis Management: A Casebook*, edited by Michael T. Charles, and John Choon K. Kim.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 Clary. Bruce B. 1985. The Evolution and Structure of Natural Hazard Polici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Jan.): 20-28.
- DHS OIG. 2007. *DHS' Domestic Nuclear Detection Office Progress in Integrating Detection Capabilities and Response Protocols*. OIG-08-19.
- GAO. 2009. *Efforts to Identify Critical Infrastructure Assets and Systems*. OIG-09-86.
- GAO. 2011. *GAO's High-Risk Series*. GAO-11-394T.
- GAO. 2009. *OMB Leadership Needed to Strengthen Agency Planning Efforts to Protect Federal Cyber Assets*. GAO-10-148.
- GAO. 2002. *Significant Homeland Security Challenges Need to Be Addressed*. GAO-02-918T.
- GAO. 2010. *Strategic Plan: Serving the Congress and the Nation 2010-2015*.

- GAO. 2010. *DHS' Use of Suspension and Debarment Actions for Poorly Performing Contractors*. OIG-10-50.
- Giuffrida, Louis O. 1985. FEMA: Its Mission, Its Partne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5(Special Issue): 2.
- Gladwin. Thomas N., & Rajesh Kumar. 1987. The Social Psychology of Crisis Bargaining: Toward a Contingency Model. *The Columbia Journal of World Business*. 22(1): 23-31.
- Godschalk, David R. 1991. Disaster Mitigation and Hazard Management. In *Emergency Management: Principles and Practice for Local Government*. Thomas E. Drabek and Gerard J. Hoetmer(ed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City Management Association.
- High-Risk List, <http://www.gao.gov/highrisk/>
- NAO. 2009. *Adapting to Climate Change, a Review for The Environmental Audit Committee*.
- NAO. 2002. *Facing the Challenge: NHS Emergency Planning in England*. HC 36.
- NAO. 2009. Performance of the Home Office 2008-09. *Briefing for The House of Commons Home Affairs Committee*.
- NAO. 1999. *The Millennium Threat: Are We Ready?*. HC 871 Session 1998-99.
- NAO's Sector. http://www.nao.org.uk/section_2.aspx
- Security Service, <https://www.mi5.gov.uk/>
- Vrijling, J. K., Pieter H. A. J. M. Van Gelder, Louis H. J. Goossens, Hessel G. Voortman, and Mahesh D. Pandey. 2004. A Framework for Risk Criteria for Critical Infrastructures: Fundamentals and Case Studies in the Netherlands. *Journal of Risk Research* 7(6): 569-579.

李育浩: 충북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과정의 지대추구행태 분석: 기대-불일치 이론을 중심으로), 현재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조직이론, 재무행정, 위기관리, 재난관리 등이며, 주요 연구로는 “여성친화적 안전도시 조성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모색(2012)”,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과정의 지대추구 분석: 기대-성과 불일치 연구방법의 적용을 중심으로(2012)”, “재난 피해지역에서의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 분석: 태풍 예위니아 사례를 중심으로(2012)” 등이 있다(ejuho@chungbuk.ac.kr).

安喆鉉: 경희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공공기관의 PR 특성과 위기관리 현황 연구: 우수이론을 중심으로), 현재 안철현위기관리연구소 소장,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청·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정부기관의 위기관리 자문위원,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의 위촉연구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국가 위기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분야이며, 주요 연구로는 “국가위기 유형별 핵심보존가치 및 지표에 관한 연구(2009)”, “국지도발 위기상황 관리체계 연구(2010)”, “중앙재

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관련 역할 및 구성시기 연구(2011)” 등이 있다(achvision@hanmail.net).

李在權: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회계 변경의 정보 유용성에 관한 연구), 현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기업 리스크 자문본부 부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리스크 및 위기 관리, 내부통제 및 감사, 정보 보안, 거버넌스이며, 주요 연구로는 “ACL 을 활용한 전산감사실무(2003)”, “경영혁신을 위한 내부통제 자체평가(2005)” 등이 있다(jklee@DELOITTE.com).

沈亨燮: 동국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논문: 지식경영성공요인이 재난관리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현재 감사원(감사연구원) 연구관으로 재직 중에 있다. 주요관심분야는 국가안전관리, 재난관리, 국가정보시스템 등이며, 주요 연구로는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disaster information reporting and status transmission system based on smart phone(2010)”, “GIS를 활용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감사접근 방안연구(2011)”, “지진재해 대응 및 관리체계에 관한 감사접근 방안(2011)” 등이 있다(hsshim@dgu.edu).

투 고 일: 2012년 09월 11일

수 정 일: 2012년 09월 26일

게재확정일: 2012년 10월 05일

Improvements for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uditing System in Korea

Ju Ho Lee, Cheol Hyun Ahn, Jae Kwon Lee, Hyung Seop Shi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udit system for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audit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e field of crisis management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 Because of uncertainty of a future crisis environment, the role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udit is predicted to be increased. Especially,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uditing system is required performance-oriented scheme.

Key word: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uditing system, auditing filed